

医療保險制度의 經濟的意義

임 기 섭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사무국장)

— 1 —

우리 經濟의 物的 基盤이 어느정도 성숙됨에 따라 第 4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은 國民福祉의 의미를 強調하면서 社會開發의 政策의 局面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最近의 勞使協調, 低賃金 및 護療保險 등 일련의 國民福祉와 관련된 政策이 그와 같은 次元의 政策展開를 말해 주고 있다.

실제로 經濟開發이 어느단계에 이르면 經濟發展은 그나라의 政治·社會·文化 내지 優理面에 걸쳐 넓게 의존 하여야만 되며, 또 이는 經濟發展의 密度를 보다 알차게 만드는 因子의 役割을 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經濟成長에 따른 經濟的 變化는 그와 有機的 관계에 있는 社會的 變化를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4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에 임하는 우리 經濟가 國民福祉에 대한 一大覺悟와 認識을 새로이 할 必要性이 제기된다.

이와같이 4次계획이 社會開發을 主要計劃部門

으로 책정하고 國民福祉의 政策意識을 함축했다는 點은 커다란 意味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長期의 안목에서 보아 우리社會의 國民福祉는 어찌한 목표와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면모에 견주어 본다면 대체로 社會開發의 當爲性을 經濟開發의 社會的 要因이라는 點에서 출발한다.

즉 社會開發은 國民이 지니고 있는 潛在的 能力を 啓發하고, 그 能力이 最大한 發揮될 수 있도록 모든 條件을 갖추어 주며, 안정된 國民生活을 保障함으로써 生活意識을 고무하여 經濟發展을 推進하는 힘을 실려 준다는 觀點이다. 이와같은 福祉指向의 社會開發은 經濟開發에 기인하는 社會的 不條理를 求償, 除去하여 이를 補完한다는 觀點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社會開發은 經濟社會의 變化에 대응하여 그 發展을 촉진시키는 政策手段이 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南北對決, 安全 保障과 관계, 全國民의 價值觀 내지 國民主體意識과 信念體系의 확립을 위한 政策手段이 되기도 한다.

결국 社會開發은 經濟開發과 더불어 궁극에

있어서 國民福祉를 지향한다는데一致한다. 福祉國家란 그러한 뜻에서 人類社會의 離不開는理想的目標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福祉國家의建設이나 國民福祉의 極大化를 위한 政策手段이란 우선적으로 그것이 經濟의 이든 社會의 이든간에 그나라 특유의 입장과 眼目이設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工業先進國의 先驗的 教訓에서 얻을 수 있는明白한事理이다.

이를비면 우리의 福祉國家에 대한範疇와 目標는 最少한 20년에 이르는 長期的인 眼目이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첫째로 經濟開發을 지원하는 福祉段階, 둘째로 福祉國家를指向하는 經濟社會의 均衡發展段階, 세째로는 福祉國家로서의 段階와 같은 政策展開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

韓國經濟의 國際化는 企業의 大型화를 意味하며 이는 곧 社會公器로서의 企業의 責務가 그만큼 더 크게 지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次元에서 企業은 從業員, 株主, 消費者에 대한一次的責任을 완수함은 물론 最近에 대두되고 있는 國民과 社會에 대한奉仕, 勞使協調와 低賃金改善, 社會福祉參與등이 보다具體화되고 土着化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려한 觀點에서

첫째, 總力安保의 基盤을 더욱 다지고 道德的見地에서 전실한 企業經營은 물론, 成果의 適正配分과 가난한 사람을 늘 생각하는 마음의 革命을 企業인이 앞장서서 實踐에 옮기는 韓國의 經營觀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民間企業活動의暢達은 經濟의 能率화

를 위해 바람직한 戰略方案인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한 義務遂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意識을 企業人은 철저히 가져야 할 것이다. 즉 國民生活을 위해 보다品質이 좋고 값싼 物品을 生產할 것이며 現在 推進되고 있는 庶政刷新이 믿는 社會의建設로 异化될 수 있도록 企業經營의健全化에 倍前의 努力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勤勞條件의改善, 社會開發의擴充을 위해 企業이 적극參與함과 아울러事前으로對處, 실효를 거두도록 綜合的인 企業活動의領域을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世界속의 韓國經濟를 이룩하는 主役으로서 우리 企業은 技術革新을 주축으로 한 產業構造의改編, 企業體質強化를實現할 것이며 國際化體制에 부응할 民間經濟協力活動을 더욱積極化하여 우리 經濟의對外競爭力提高와成長潛在力を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世界最尖端技術의導入·活用, 韓國의 企業組織의 구축, 海外市場의 경쟁 경향에對應할 용기와 賢明, 受援國으로부터 供與國으로의經濟方向의 단계적 조정, 기업의 生産성向上과經營合理化등 일련의課題는來日의繁榮을 위한企業經營의 根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企業은 經濟的次元을 넘어 社會文化등 여러가지 分野에 대하여 國民의 要請에當面하고 있다. 이에 經濟界는 韓國에 있어企業의役割과機能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高度產業社會形成者로서의 責務를 성실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

우리가 指向하고 있는 國民總和의 구현은 官民·經濟界·社會各界와의 물질틈없는 유대와

協調體制 또 온 國民의 使命意識과 呼應力에 의 해서 이룩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를 위해 經濟人들은 經濟建設의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國民의 批判의 소리를警覺心을 갖고 받아 들여야 할 것이며 經濟界는 國民企業으로서 맡은 바 重且大한 使命과 責任을 完遂하고 온 國民과 더불어 밝은 來日을 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강조되면서 부각된 社會開發의 政策的 局面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醫療保險制度의 効率的 推進이다. 이를 安定된 國民生活의 보장을 통해 生活意慾을 진작시키며 國民의 潛在的 능력을 개발한다는 점 뿐만 아닌 經濟發展의 次元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큰意義를 찾을 수 있다.

社會開發이 國民福祉의 向上과 國民主體意識의 확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政策手段이 밀반침 되어야 한다. 금년 1월 1일 改定된 醫療保險法의 意義는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우선 500人이상의 常備勤勞者를 雇傭하는 事業場은 當然適用對象集體로 오는 5월 30일까지 자주적으로 醫療保險組合을 設立하게 된다.

이러한 醫療保險組合은 事業場內의 產業平和의 기틀로서 事業場의 家族的 紐帶化와 새 次元의 劋使關係를 유도 할 것이며, 아울러 밝은 社會建設의 核心單位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經濟界는 醫療保險制에 관해 몇년 前부터 關心과 研究를 켜울리하지 않았던 것이며, 또한 그 導入과 實施를 위해 신중과 안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도 또한 밝혀왔던 것이事實이다.

또한 앞날을 透視하면서 經濟界는 각 關聯機關과 긴밀한 협의를 거듭해 왔으며 이의 소산으로 지난 1월 13일 經濟界的 醫療保險當然適用事集體代表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全國醫療保險協議會까지 設立케 되었다.

— 4 —

近代國家의 概念이 夜警國家로 부터 福祉國家로 轉換됨에 따라 國家單位行政 全般에 걸친 公衆保健 및 醫療의 影響은 漸次的으로 增大하고 있다.

既存 疾患의 事後的措置를 包含하는豫防醫學 및 治療醫學의 奉仕는 물론 傳統的인 環境衛生事業과 積極的인 國民醫療事業은 現代福祉國家 구현의 中樞的인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醫療制度面에서도 開業醫制度, 國公立醫療施設의 運營, 醫藥의 未分業等 混合된 醫療體制 속에서 또한 現行 醫療酬價에 依하여 病醫院利用度에 影響을 주고 있기 때문에 病醫院을 利用함으로써 現代醫療의 恵澤을 받는 사람이 農村으로 갈수록 낮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 醫療要求量의 性質의 構成에서 보면 大多數가 自費負擔이고 保險醫藥나 救療對象이 상대적으로 극히 적다는 점으로도 國民負擔能力의 低位性을 알수 있고 計劃的인 醫療保險制度의 必要性이 充분히 說明된다.

이러한 必要性에 부응하여 導入된 醫療保險制度는 一面으로 經濟成長의 結果, 즉 成長의 열매를 全國民에 풀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특히 人間의 가장 큰 욕구가 健康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이 制度는 社會福祉 구현의 첫段階이자 가장重要な 社會保障이라 할 수 있다.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보험제 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5·16革命後 1963年에 本法을 제정 公布한 바 있으나 諸般與件의 未備로 그 實施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經濟가 높은 成長을 이룩하게 되자

社會開發의 필요성이 認識되어 4次 5個年計劃의 重要施策으로 부작된 것이다.

이러한 醫療保險制가 當然適用事業體에 대해 강제성을 띠우고 있는 것은 그것이 社會保險의 主體임에 입각, 本制度의 보급을 강화하고 피보험자에 의한 逆選擇을 防止할 뿐아니라 保險財政의 安定性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國民醫療施設의 據大方策으로 國民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無能力者 低所得層은 政府가 이를 管掌, 生保者에게는 醫療費 全額을 國庫가 負擔하고 低所得層에 대해서는 30%를 國庫가 부담하게 되나마지 70%에 대해서는 3年間의 無利를 分割償還하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할 예정이다.

한편 醫療保險組合의 주된 事業內容은組合이 保險者를 위해 醫療福祉施設을 設置·運營하는 것으로서, 이는 實質적으로 그 運營, 財政 등 other 社會的으로 미치는 波及效果를 감안하면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며, 또한 早期的으로 실현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組合이 그組合員의 健康維持 및 福祉增進을 위하여組合이 일관된 계획하에組合員의 健康管理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意義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醫療保險制度 實施上의 애로요인의 하나로 醫療機關과의 관계에서 醫療費를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過剩醫療를 방지하여 保險財政의 安定과, 여타의 福祉增進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의료기관과 관련되어 많은 애로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過剩醫療가 發生하고 醫療費가 등극하여 대부분의 의료보험조합이 만성적으로 赤字를 나타내며 이를 社會的인 形勢 등 그 副作用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의료시설과 의료요원의 부족과 偏在가 현재 醫療體系의 개선과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醫療報酬價와 관련, 保險醫療報酬價의 基準設定이나 賠償의 支拂方法 등 의료기관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우리나라 實情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本 醫療保險制度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전국민이 經濟的 손실이 없이 고른 醫療惠澤을 받기 위해서 政府뿐만 아니라 醫療機關과 關聯企業들의 호흡이 맞아야 하는 만큼 企業人们的 적극적인 協調가 있어야 할 것이다.

